

■ 목 차

■ 지평지성 소식 ■

- 지평지성, 'ACCESS TO MYANMAR(미얀마 투자 A-Z)' 성황리에 개최.....3

■ 업무사례 ■

- 지평지성, 공정위를 대리하여 쉐컴이 제기한 2,700억원대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5
- 지평지성, (주)이글루시큐리티, 삼정KPMG, 고려대학교와 차세대 보안대책 제시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6
- 지평지성, 전국 교육청을 대리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방어 소송에서 승소.....7

■ 최신 법령 ■

- [도산] 시행사의 파산.....8
- [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10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12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14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18
-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19
- [보험]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규정안 예고.....21
- [행정]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분석 ①.....23

■ 최신 판례 ■

- [노동]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26
- [행정]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거리제한 관련 시행규칙과 조례의 관계.....29

■ 단신 ■

- 이공현 대표변호사, 한남대학교 개방이사와 송호대학교 이사로 선임 32
- 김지형 고문변호사,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 32
- 임성택 변호사, 법무부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33
- 김상준 변호사, 한국상사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삼각합병제도' 세션 토론자로 참석 33
- 김성수 변호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4년차 전공의 연수교육에서 '정신과의료사고의 현황 및 대응'이라는 주제로 강의 외 1 34
- 이상근 변호사, 법제처와 부산광역시가 공동 주관하는 법제교육에서 부산광역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률일반'에 대하여 강연 34
- 강율리 변호사, 2013 국제학술대회에서 '미래의 동업자 찾기'에 대한 발표 35
- 이항규 변호사, 2013 Korea Capital Markets Forum에 참석하여 "Legal Issues for Listing on Korea Exchange"라는 주제로 2부 세션 발표 외 1 35
- 박형삼 변호사, 한국사내변호사회가 주최한 제3회 사내변호사 아카데미에서 '부당내부거래 규제 현황과 전망'에 관하여 강의 진행 36
- 정철 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글로벌 M&A 민간 전문업계 간담회 참석 36
- 류혜정 변호사, 금호아시아나 인재개발원 해외농업개발 기초인력양성교육에서 '해외농업개발 대상국 법률 제도 및 투자절차'에 대하여 강의 37
- 한승혁 호주변호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글로벌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제1회 ASEAN 지역전문가 양성 강좌'에서 '아세안 투자진출시 유의사항'이라는 주제로 강의 예정 외 1... 37
- 박성철 변호사, 논단 '헌법의 품격, 재판관의 자격'이 창작과 비평 2013년 여름호 (통권 160호)에 게재 38
- 배지영 변호사, 중동법 연구를 위해 해외 장기연수 38

■ 지평지성 소식 ■

지평지성, 'ACCESS TO MYANMAR(미얀마 투자 A-Z)' 성황리에 개최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주관한 'ACCESS TO MYANMAR(미얀마 투자 A-Z)'가 지난 6월 26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외교부의 윤강현 국제경제국장이 '미얀마 정세 및 투자 환경 개관'을, 지평지성의 정철 변호사가 '미얀마 투자 및 부동산개발 법제'를, 장성 수석자문위원이 '미얀마 투자 환경 및 유의사항 Q&A'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 로펌 중 최초로 미얀마에 진출하여 현지법인(JIPYONG JISUNG MYANMAR)을 설립하고 유일하게 현지에서 밀착된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지평지성의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관련 사진]



[개회사를 하고 있는 지평지성의 양영태 대표변호사]



[2세션과 3세션의 발제를 진행하고 있는 지평지성의 정철 변호사와 장성 수석자문위원]

■ 업무사례 ■

지평지성, 공정위를 대리하여 퀄컴이 제기한 2,700억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퀄컴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2,731억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표준기술보유사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활동의 한계에 대해 판단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는 조건부 리베이트의 위법성을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기사]

- 인베스트조선 - 퀄컴, 2731억원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패소(2013. 6. 19.)
- 오마이뉴스 - 서울고법 "공정거래위, '퀄컴'에 2731억원 과징금 정당"(2013. 6. 19.)
- 법률신문 - 퀄컴, 2730억 과징금 소송서 패소(2013. 6. 19.)
- 매일경제 - 공정위 상대 취소소송 기각, "퀄컴 과징금 2732억 내라"(2013. 6. 19.)
- 한국경제 - 퀄컴,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2013. 6. 19.)
- 중앙일보 - 법원 "공정위, 퀄컴에 2731억 과징금 정당"(2013. 6. 20.)
- 아주경제 - 퀄컴,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2013. 6. 20.)

[담당 변호사]



김지홍 변호사



송한사 변호사



장품 변호사



이병주 변호사

■ 업무사례 ■

지평지성, (주)이글루시큐리티, 삼정KPMG, 고려대학교와 차세대 보안대책 제시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지평지성이 지난 2013년 6월 13일 (주)이글루시큐리티, 삼정KPMG, 고려대학교와 차세대 보안대책 제시를 위한 분야별 업무 협약식을 갖고 상호간 양해 각서를 교환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컨설팅 서비스 분야에서는 전례가 없던 협약으로서 기업 활동의 위협 요인을 더욱 정밀하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차단할 수 있는 통합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관련 기사]

- 보안뉴스 - 이글루시큐리티, 법무법인 지평지성 · 삼정KPMG · 고려대 상호 협력(2013. 6. 14.)
- 서울경제 - 삼정KPMG, 차세대 보안대책 제시 위한 포괄적 협력 나서(2013. 6. 14.)
- 파이낸셜뉴스 - 이글루시큐리티, 고려대 등과 차세대 보안대책 제시 위한 포괄적 협력(2013. 6. 14.)
- 경제투데이 - 이글루시큐리티, 차세대 보안대책 제시 포괄적 협력(2013. 6. 14.)

[담당 변호사]



최승수 변호사

■ 업무사례 ■

지평지성, 전국 교육청을 대리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방어 소송에서 승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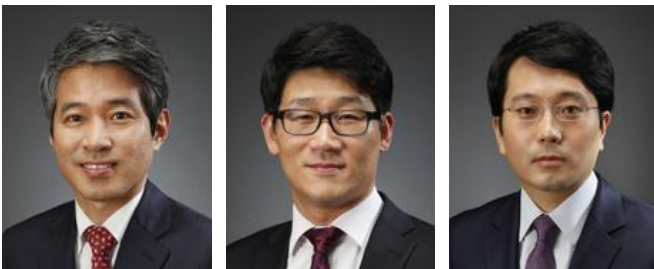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전국 교육청(서울특별시 외 4)을 대리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방어를 한 사건에서 공립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도 개별 징수 처분의 효력이 살아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대법원에서 피고 패소로 파기되었음에도 환송심에서 다른 사유로 다시 승소했습니다.

[관련 기사]

- 연합뉴스 -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소송 파기환송심도 학부모 패소(2013. 4. 24.)
- 헤럴드경제 - '학교운영지원비 반환 소송' 또 기각... "징수처분 유효"(2013. 4. 24.)
- 노컷뉴스 - "학교운영지원비 돌려달라" 서울시 등 상대 소송낸 학부모들 패소(2013. 4. 24.)

[담당 변호사]



임성택 변호사

박용대 변호사

박성철 변호사

■ 법률 논단 ■

[도산] 시행사의 파산



(법무법인 지평지성 권순철 변호사)

주택경기가 침체되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시행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는 시행사에 대한 공사비채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행사가 엄연히 현존하고 있는 법인이라면 시공사 입장에서 공사비채권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여 임의로 대손처리하기도 곤란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 시공사의 주도 아래 시행사의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법인을 소멸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파산절차인데, 시행사의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시공사로서는 미수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고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의 파산원인으로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파산원인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거액의 대출금채무와 공사비채무를 부담하는 반면 미분양 물건 외에 특별한 자산이 없는 것이 시행사이므로 파산선고는 큰 무리 없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시행사의 파산신청을 고려할 때 실무상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법원은 파산신청을 검토하고 선고하기에 앞서 파산신청인에게 예납금을 납부하도록 명합니다. 예납금은 파산절차의 진행비용으로 쓰이는데, 채무자의 부채규모에 따라 액수가 달라집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채무자의 부채규모가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3천만원을 예납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납금은 납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통상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파산신청이 기각되므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신청은 채무자 본인(시행사) 뿐만 아니라 채권자(시공사)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신청의 경우에도 대개는 채무자와 미리 협의하여 진행하지만 만약 채무자와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신청하여 파산이 선고될 경우, 채무자가 이에 대해 즉시 항고로 다투는 경우도 더러 발생합니다. 항고심에서 파산선고가 번복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항고심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향이어서 파산종결까지 당초 예상보다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시행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대출을 받을 때 시행사의 대표이사,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 개인들도 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시행사의 파산만으로는 -보증인들에 대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세무당국이 시공사의 대손처리를 합당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인들의 개인파산절차를 병행하거나 파산신청 이전에 시공사와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미리 보증을 해소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신 법령 ■

[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박형삼 변호사 | 이병주 변호사 | 이경호 변호사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13. 7. 2. 국회 본회의 통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규정 신설 및 현행 부당지원금지규정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개정

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 (1) 규제대상 행위 : ①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조건보다 상당한 유리한 조건의 거래, ②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거래, ③ 특수관계인과 현금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④ 사업능력, 신용도, 품질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 (2) 규제대상 회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한정하고, 거래상대방도 총수일가 또는 총수일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로 한정(제23조의2 제1항)
- (3) 부당한 거래 등을 통해 이득을 얻는 거래상대방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고(제24조의2 제2항), 총수일가가 부당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66조 제1항 9의2)

나.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 강화

- (1) 종전에는 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면 규제할 수 없었으나, '상당히' 유리한 경우에도 규제할 수 있도록 부당지원행위 성립요건을 변경하여 강화(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 (2) 거래단계의 중간에서 실질적인 역할없이 수수료만 챙기는 이른바 '통행세' 관행에 대한 규제 근거를 신설(제23조 제1항 제7호 나목)
- (3) 아울러 종전에는 부당지원을 한 지원주체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부당지원을 통해 실제 이득을 본 지원객체에게도 과징금을 부과(제24조의2 제2항)

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되었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당한 富의 이전을 차단하고, 통행세 관행을 규제할 근거규정의 신설 및 부당지원행위 성립요건을 완화하여 대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독립중소기업의 경우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혁신과 발전을 조장하여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

라. 시행일은 부칙규정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으므로 금번 개정내용은 빠르면 2014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 개정법 시행 이전 종료된 거래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며 개정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거래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1년 간은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경과규정을 둠

2. 다운로드 : 공정거래위원회 2013년 7월 2일자 보도참고자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2013. 7. 2. 국회 본회의 통과)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

가. 부당특약 금지

-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제3조의4)
- (2) 금지되는 부당특약 : ① 원사업자가 계약서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②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③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④ 기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나. 하도급대금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의무 강화

원사업자가 당좌거래정지, 부도,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대금보증기관이 수급사업자의 보증금 지급 요청 시 30일 이내 보증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제13조의2 제3항). 다만 보증금 지급요건 충족 등에 대해 이견 있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증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다. 하도급대금 대물변제 요건 의무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대물로 변제할 경우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할 것을 규정. 물품의 종류에 따라 제시할 자료, 자료제시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제17조 제2항 및 제3항)

라. 시행일은 부칙규정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으므로 금번 개정내용은 빠르면 2014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

2. 다운로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13. 7. 2. 국회 통과)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와 관행 개선 및 가맹점사업자의 고충과 애로사항 해소

가. 영업지역 보호제도 강화

- (1)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이를 기재하도록 의무화
-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해당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추가 설치하는 행위 금지

나.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및 비용분담 의무화

- (1) 가맹본부는 시설노후화 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
- (2)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시 소요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가맹본부도 일정금액을 부담하도록 의무화

다.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 (1)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 금지.
- (2)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간주되는 행위; (i)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영업시간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영

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 (ii)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

라. 과도한 위약금 부과행위 금지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금지

마. 예상매출액 자료 서면제공 의무화

- (1) 가맹본부는 계약체결시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미제공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2)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서면제공자료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미보관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바. 허위·과장 정보제공 처벌기준 강화

- (1) 기존에는 가맹희망자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만 금지하였으나,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제공도 금지
- (2)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금지규정 위반시 벌금액 상향조정(1억5천만원→3억원)

사.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및 제공방식 변경

- (1) 정보공개서 제공시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도록 변경

- (2)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약관규제법 위반사실여부, 가맹점의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가맹본부의 지원사항을 추가하도록 함

아.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단체협약권 부여

- (1) 동일브랜드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에 대해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에 성신헌의 의무 부과
-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위반시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자. 가맹금반환 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가맹금반환청구권 행사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

차. 동반성장협약제도 및 서면실태조사 제도 도입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동반성장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협약 성실히행시 인센티브 부여 근거 마련
- (2) 가맹사업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위가 서면실태조사 및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 마련

카. 과징금 조항 정비 및 전속고발권 폐지

- (1)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원 미만에서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 (2) 현재 검찰만 보유하고 있는 고발요청 권한을 감사원과 중소기업청에도 확대 부여하고,

해당 기관으로부터 고발요청이 있는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

2. 다운로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13. 7. 2. 개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13. 7. 2. 국회 통과)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개정

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시정조치가 확정된 이후에만 제10조에 따라 무과실 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주장제한을 폐지함

나.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손해액 입증이 성질상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도록 하는 손해액 인정제도 도입

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시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에 참여한 한국소비자원 임직원에 대하여는 형법규정에 의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2. 다운로드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13. 7. 2. 개정)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1.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정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엄격한 과징금 산정을 예고

가.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별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였음. 이번 개정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과징금 산정과정의 보다 투명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위반에 따라 부과될 과징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음. 개정된 과징금 고시는 2013년 6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나. 이를 위해 ①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시장에 미치는 효과, 경쟁제한성, 시장 점유율, 관련 매출액, 부당이득 규모, 지역적 범위 등 중대성의 정도 결정 시 고려할 사항들을 체계화하여 점수 산정표 방식으로 구성된 "세부평가 기준표"를 과징금 고시의 별표 내용으로 명시하고, ② 특히, 과징금 부과기준을 결정에 대한 공정위의 재량범위가 큰 부당한 공동행위의 부과 기준율(0.5 ~ 10%)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여 법 위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상향시켰음

<부당한 공동행위 중대성 정도별 부과 기준율>

(현행)		(개정)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 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7%이상 10%이하	매우 중대한	2.6이상	8%이상 10%이하
			2.2이상 2.6미만	7%이상 8%미만
중대한	3%이상 7%미만	중대한	1.8이상 2.2미만	5%이상 7%미만

중대성이 약한	0.5%이상 3%미만

	1.4이상 1.8미만	3%이상 5%미만
중대성이 약한	1.4미만	0.5%이상 3%미만

2. 다운로드 :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13. 6. 5. 개정

■ 최신 법령 ■

[보험]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규정안 예고

배성진 변호사 | 이유경 변호사

보험회사 RBC(Risk Based Capital)제도 개선, 보험회사의 과징금 등에 대한 회계처리 및 손익분석기준 개선, 보험회사의 투자손익 배분기준 개선, 장기손해보험상품의 표준사업방법서상 분류기준 개선(안 별표14)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규정안이 2013년 6월 18일 예고되었습니다. 의견제출시한은 2013년 7월 28일이고, 시행예정일은 2013년 8월 1일입니다. 예고된 개정규정안(이하 '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내용

1) 보험회사 RBC(Risk Based Capital) 제도 개선(안 별표22)

- ① 해외채권에 대해 1년 이상 환위험을 헤지한 경우 잔존기간 전체에 대해서 금리 리스크 감소를 인정하였습니다.
- ② 정부가 SOC 사업 운영에 필요한 현금흐름을 전액(100%) 보증하거나, 사업 해지시 대출원금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무위험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2) 보험회사의 과징금 등에 대한 회계처리 및 손익분석기준 개선(안 별표4, 별표16, 별표17)

보험회사의 과징금 등을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토록 하고, 손익배분시 자본계정으로 배분하여 주주가 관련비용 전액을 부담토록 개선하였습니다.

3) 보험회사의 투자손익 배분기준 개선(안 별표16)

투자손익의 보험상품별 배분비율 산출시 책임준비금 공제금액에서 위험관련 지급준비금을 제외시켰습니다.

4) 장기손해보험상품의 표준사업방법서상 분류기준 개선(안 별표14)

장기손해보험상품분류기준에 '장기손해보험 중 비용발생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보장(장기 비용)'을 신설하여, 계약자가 운전자보험 등 가입시 불필요한 담보를 추가하지 않고 장기 비용이 주계약인 상품에 가입 가능토록 개선하였습니다.

2. 다운로드 :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의 변경에 대한 예고」

■ 최신 법령 ■

[행정]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분석 ①

정원 변호사 | 박호경 변호사

1. 행정소송법 개정에 관한 논의는 오랫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최근 몇 차례 개정시도는 국회임기만료로 인한 법안폐기로 좌절되었습니다(2007년 법무부 제출안, 2011년 의원발의안). 최근 법무부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의견제출기한 2013. 4. 29.),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기존 논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조정절차에도 불구하고 화해권고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점이나, 예방적 금지소송이 개정안에서 빠진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잔여임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행정소송법 개정의 가능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2회에 걸쳐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예상 파급효과를 살펴 보겠습니다.

2.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안 제4조, 제41조 이하)

현행법에 의하면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을 뿐 특정한 처분을 해 달라는 소송은 할 수 없었습니다. 가령 건축허가거부처분의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별도의 허가처분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통한 직접적 권리구제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권리구제 증진을 위하여 특정한 내용의 처분을 요청하는 의무이행소송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된다고 하여, 법원이 모든 행정처분의 발급을 명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①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이 법령상 명백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선고합니다. 반면, ②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할 것을 선고할 뿐입니다(제44조).

효력과 관련하여 ① 유형은 독일의 특정행위명령판결과 유사하게 행정청의 특정 처분을 명하는 반면, ② 유형은 특정 처분을 명령하는 것에는 이르지 아니하고, 행정청이 판결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할 의무만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기속행위에는 주로 ① 유형이 적용되는 반면, 재량행위에는 ② 유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거부처분취소소송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소송형태를 적절히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일 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①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단순히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처분이 발급되어야 하는 법적 근거를 면밀하게 제시하는 것을 필요하며, ② 상황에 따라 의무이행소송과 거부처분취소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3. 원고적격 완화 내지 확대(안 제12조)

현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위 요건을 ‘법적 이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과거 논의된 ‘정당한 이익’보다는 한발 물러선 표현으로 볼 수 있지만, 원고적격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법률상 이익’과 ‘법적 이익’의 실질적인 차이는 다수의 판례가 축적되어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법원은 ‘법률상 이익’을 처분의 근거법률에 한정하지 않고 실제법 및 절차법을 포함한 관계법률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법적 이익’은 기본권을 포함한 헌법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근거 법률뿐만 아니라 헌법적 차원에서의 접근도 한층 중요해질 것입니다.

4. 가처분제도 도입(안 제26조)

현행 집행정지제도는 부담적 행정처분을 중심으로 한 구제절차였습니다. 가령 과징금부과처분의 경우, 집행정지를 통하여 사전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익적 행정처분을 거부할 경우, 거부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수익적 행정처분의 효과가 발생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권리구제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처분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제도는 기한부 처분(어업면허, 체류기간 연장 등)의 갱신이 거부될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호에서는 집행정지, 소변경·이송, 당사자소송,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 국가를 상대로 한 가집행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5. 다운로드 : [행정소송법 개정안](#)

■ 최신 판례 ■

[노동]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김성수 변호사 | 여연심 변호사

1. 판결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고용규정 제10조 각 항에 따라 매년 3월, 6월, 9월, 12월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상근직 근로자에게 각 월 기본급의 100퍼센트의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며, 위 각 지급일 현재 사직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상근직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과는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2) 근로기준법 제50조 각 항은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에서는 위와 같이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1주의 총 근로시간 산정시 휴일근로시간을 공제하라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시간외근무 억제라는 할증임금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공단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을 통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과, 휴일근로도 초과근로에 해당함을 전제로 미지급 초과근로 수당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1) 이 사건은 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통상임금 소송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으로 가장 논란이 된 금아리무진 판결과 일견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금아리무진 판결은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 중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해당 상여금은 금액이 확정된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금아리무진 판결 이후 하급심에서는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 중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사실을 해당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 판결은 기간 중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재직중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사실에 주목하여 "지급일 현재 재직중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상급심이 재직중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사실에 주목할 것인지, 아니면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사실(즉,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받았음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에 주목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2) 아울러 이 사건에서는 휴일근로가 초과근로(연장근로)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 판결이 없으나, 하급심은 잇따라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택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도록 법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과 같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법개정과 관계없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1주

간의 근로시간 한도인 52시간에 휴일근로시간도 포함된다고 해석될 것입니다. 휴일근로가 상시화된 사업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4. 다운로드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4. 19. 선고 2012가합50704 판결](#)

■ 최신 판례 ■

[행정]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거리제한 관련 시행규칙과 조례의 관계

정원 변호사 | 박호경 변호사

1. 판결의 취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 상 허가요건인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안전과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 그 허가대상지역 일대의 인구조밀도, 충전사업소를 설치할 건물과 인근 건물의 용도·구조 및 특성, 액화석유가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나 범위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입법 목적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

조례에서 정한 인구밀집건물로부터의 거리제한(이하 ‘거리제한’)과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이 정한 저장설비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거리(이하 ‘이격거리’)가 상이하더라도, 위 거리제한은 동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반면, 이격거리는 동법 제3조 제4항에 근거한 것이어서, 규정 근거 및 목적이 다르다. 거리제한이 이 사건 이격거리와 일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액화석유가스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위배되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사실관계

고양시장은 2010년 11월 19일 고양시 덕양구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던 A씨의 허가 신청에 대하여, 조례에 규정된 ‘인구밀집 지역 건물 외면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지역에서의 충전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였습니다. A씨는 위 조례가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법이 정한 규제 수준을 초과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 [별표3]에 따르면 '안전거리에 관한 부분은 위 [별표3]에서 정한 바와 같이 안전거리의 2배 이내의 범위 안에서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을 뿐, 이를 초과하여 임의로 안전거리를 정할 수 있을 없는 것인데도, 고양시 조례 제6조 제1호의 거리제한규정은 액화석유가스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무효인 조례를 근거로 한 처분임을 이유로 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몇 년 사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과 관련하여, 충전사업소의 안정성 확보 등을 강조하며 관련 규제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기준 중 하나인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을 충족하려면 도로의 폭이 지적공부 뿐만 아니라 실제 현황도 8m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며,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509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8m 도로로 계획되었으나 일부 구간에서 가로수 등이 도로를 침범하고 인근 주민이 무단으로 돌담을 설치하여 8m 폭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의 부지는 그 일면이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을 요구하는 강남구 허가기준에 대하여,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기준 설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입법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실시하며 기본권 침해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8. 4. 24. 자 2007헌마243 결정).

대상판결에서 원심은 충전사업소 설치와 관련한 거리제한이라는 측면에서 조례와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의 규제대상 및 목적이 동일하다고 보았으며, 위 조례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조례는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기준이 시행규칙의 기준과 외견상 상이하더라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거리제한 관련 행정규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각 규제의 목적

이 어떠한 이유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상세한 설시를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4. 다운로드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8205 판결](#)

■ 단신 ■

이공현 대표변호사, 한남대학교 개방이사와 송호대학교 이사로 선임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공현 대표변호사](#))

이공현 대표변호사가 한남대학교 학교법인(대전기독교학원) 개방이사와 송호대학교 학교법인(송호학원) 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김지형 고문변호사,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지형 고문변호사](#))

김지형 고문변호사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임기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언론의 자유' 수호와 '책임있는 신문' 구현을 위해 발행인과 편집인 그리고 일선기자들이 함께 설립한 국내 유일의 언론 자율 감시기구이며 언론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 [신문윤리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 연합뉴스\(2013. 4. 25\)](#)

임성택 변호사, 법무부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지평지성 임성택 변호사)

임성택 변호사가 법무부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임기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입니다.

법무부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는 통일관련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작업 외에 남북교류 및 협력과 관련된 법적 분쟁의 해결방안, 통일과 관련된 외국 법령의 자료수집 등을 진행합니다.

[관련 기사]

- 법무부, 통일대비 '남북 법령연구특위'구성 - 연합뉴스(2013. 5. 25)

김상준 변호사, 한국상사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삼각합병제도' 세션 토론자로 참석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상준 변호사)

김상준 변호사가 지난 4월 26일 'M&A 최근 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한국상사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삼각합병제도' 세션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4년차 전공의 연수교육에서 '정신과 의료사고의 현황 및 대응'이라는 주제로 강의 외 1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성수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가 지난 6월 20일 2013년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4년차 전공의 연수교육에서 '정신과 의료사고의 현황 및 대응'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성수 변호사가 지난 5월 21일 보건복지부 주관 및 서울시 서울의료원이 주최한 국내 실내흡연규제 관련 워크샵에서 '실내흡연규제정책의 국내법규 이행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상근 변호사, 법제처와 부산광역시가 공동 주관하는 법제교육에서 부산광역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률일반'에 대하여 강연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상근 변호사)

부산 사무소 이상근 변호사가 지난 4월 24일 법제처와 부산광역시가 공동 주관하는 법제교육에서 부산광역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률일반'에 대하여 강연하였습니다. 이상근 변호사는 현재 부산광역시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울리 변호사, 2013 국제학술대회에서 '미래의 동업자 찾기'에 대한 발표



(법무법인 지평지성 강울리 변호사)

강울리 변호사가 지난 5월 3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관계법센터와 교수학습센터에서 주최한 2013 국제학술대회(급변하는 법률시장과 법학교육의 개혁)에서 '미래의 동업자 찾기'라는 제목으로 글로벌 로펌이 바라는 인재상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변호사로서 성공하려는 후배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 법률저널(2013. 5. 20.)

이행규 변호사, 2013 Korea Capital Markets Forum에 참석하여 "Legal Issues for Listing on Korea Exchange"라는 주제로 2부 세션 발표 외 1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행규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가 지난 6월 27일 한국거래소가 홍콩에서 주최한 2013 Korea Capital Markets Forum에 참석하여 "Legal Issues for Listing on Korea Exchange"라는 주제로 2부 세션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행규 변호사가 지난 5월 15일 해외농업개발협회에서 주최한 동남아시아 해외농업개발 세미나에서 '동남아 해외농업투자 관련 법제'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거래소 27일 홍콩서 '코리아 캐피탈 마켓' 포럼 개최 - 머니투데이(2013. 6. 27.)
- 거래소, 홍콩서 '2013 코리아 캐피탈 마켓 포럼' 개최 - 경제투데이(2013. 6. 27.)
- 거래소, 홍콩서 '2013한국자본시장포럼' 개최 - 세계파이낸스(2013. 6. 27.)

박형삼 변호사, 한국사내변호사회가 주최한 제3회 사내변호사 아카데미에서 '부당내부거래 규제 현황과 전망'에 관하여 강의 진행



(법무법인 지평지성 박형삼 변호사)

박형삼 변호사가 지난 5월 30일 서울지방변호사회 후원으로 한국사내변호사회가 주최한 제3회 사내변호사 아카데미에서 '부당내부거래 규제 현황과 전망'에 관하여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정철 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글로벌 M&A 민간 전문업계 간담회 참석



(법무법인 지평지성 정철 변호사)

정철 변호사가 지난 4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M&A 민간기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개선안을 모색하는 목적을 가진 글로벌 M&A 민간 전문업계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류혜정 변호사, 금호아시아나 인재개발원 해외농업개발 기초인력양성교육에서 '해외농업개발 대상국 법률 제도 및 투자절차'에 대하여 강의



(법무법인 지평지성 류혜정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가 지난 6월 24일 금호아시아나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해외농업개발 기초인력양성교육에서 '해외농업개발 대상국 법률 제도 및 투자절차-러시아/동남아 농업투자 관련 법제'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한승혁 호주변호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글로벌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제1회 ASEAN 지역전문가 양성 강좌'에서 '아세안 투자진출시 유의사항'이라는 주제로 강의 예정 외 1



(법무법인 지평지성 한승혁 호주변호사)

한승혁 호주변호사가 7월 1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글로벌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제1회 ASEAN 지역전문가 양성 강좌'에서 '아세안 투자진출시 유의사항'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2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글로벌연수원에서 주관한 '베트남 비즈니스 계약 실무 및 협상전략 과정' 교육에서 '베트남 투자 또는 사업 철수 방법의 한 유형으로서의 지분 양수도'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자료]

- [제1기 아세안 지역전문가 양성 강좌 교육안내](#)

박성철 변호사, 논문 '헌법의 품격, 재판관의 자격'이 창작과 비평 2013년 여름호(통권 160호)에 게재



(법무법인 지평지성 [박성철 변호사](#))

박성철 변호사의 논문 '헌법의 품격, 재판관의 자격'이 창작과 비평 2013년 여름호(통권 160호)에 게재되었습니다.

배지영 변호사, 중동법 연구를 위해 해외 장기연수



(법무법인 지평지성 [배지영 변호사](#))

지평지성의 배지영 변호사가 중동법 연구를 위해 지난 6월 요르단-영국-중동에 걸친 해외 장기연수를 시작하였습니다.